

2020년 소방장, 소방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0년 소방장, 소방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0일
울산광역시

□ 시험개요

- 선발인원 : 소방장 23명, 소방교 36명
 - ※ 근속승진자가 상위계급(소방위, 소방장)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할 경우 근속승진한 당해계급 및 하위계급의 선발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
- 일시/장소 : 2020. 9. 6.(일) 11:00 ~ 12:15(75분) / 신일중학교
- 응시자격
 - 시험 실시일(20. 9. 6)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(1년)에 달할 것
 -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6조 제1항의 승진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
- 시험과목 : 계급별 3과목

구 분	시험과목
소방장	소방법령Ⅱ, 소방법령Ⅲ, 소방전술
소방교	소방법령Ⅰ, 소방법령Ⅱ, 소방전술

- ♣ 출제범위(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)
- 소방법령Ⅰ : 소방공무원법(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소방법령Ⅱ : 소방기본법,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 - 소방법령Ⅲ : 위험물안전관리법,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 - 소방전술 : 화재진압·구조·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·기술 및 기법 등
(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1 참고)

□ 추진일정

원서 접수 7.27. ~7.30.	⇒	문제 출제 7.27.~ 8.21.	⇒	편집 인쇄 8.29.~ 9.3.	⇒	반출 이송 9.4.	⇒	필기 시험 9.6.	⇒	시험 문의 9.6.~ 9.7.	⇒	채점 9.15.	⇒	합격자 발표 9.18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□ 세부계획

1. 응시원서 접수 ※ 중앙 일괄 접수
 - 접수기간 : 7. 27.(월) 10:00 ~ 7. 30.(목) 18:00
 - 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내만 가능
 - 접수방법 : 중앙소방학교 119고시(원서접수사이트) 접수

♣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등록 : 사진파일(JPG, PNG, BMP), 해상도(100dpi이상), 반명함 증명사진
- 사진제한 :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수수료 : 없음
- 접수확인 :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 - ※ 확인내용 : 본인 소속 시도, 이름, 임용일자, 전화번호 등

2. 시험문제지 반출 및 운송·보관 ※ 세부시행계획 별도수립

- 반출일시 : 9. 4.(금) 13:00 ※ 소방위 승진시험문제지와 동시 반출
- 반출장소 : 별도 고지
- 운송방법 : 보안운송업체 이용(인쇄업체 → 보안장소 → 필기시험장)
- 보관장소 : 전문보안 운송업체 또는 시·도 고시계 금고(보안장소)
 - ※ CCTV가 설치된 금고가 설치된 장소

3. 필기시험

- 일 시 : 9. 6.(일) 11:00 ~ 12:15
- 장 소 : 신일중학교
- 문 항 : 75문항(과목별 25문항)
- 시 간 : 75분(1문항 당 1분) → *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3조
 - ※ 법령관련 문제는 필기시험일(9.6.) 현재, 시행중인 법령에서 출제

4. 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→ *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8조

- 회수기준 : 시험이 끝난 문제지와 답안지 전량 회수
- 보관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, 문제지(30일)·답안지(1년)

5. 필기시험 문의기간

- 기 간 : 9. 6.(일) 13:00 ~ 9. 7.(월) 24:00
- 방 법 : 중앙소방학교 119고시(119gosi.kr)에 신청
※ 절차 :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필기시험 문의 → 문의서(붙임 5) 첨부*
- 자격요건 :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만 문의 가능
- 시험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: 문의사항 처리(필요시 운영)

6. 필기시험 채점

- 일 시 : 9. 15.(화) 09:00 ~18:00 예정
- 장 소 : 시청 고시편집실
- 방 법 : OMR카드 전산채점(천공답안지 활용 수작업 병행)
- 기 준 : 과목당 25문항/ 매과목 100점 만점(객관식 1문제당 4점)

7. 합격자 발표 : 9. 18.(금) 16:00 예정 / 소방본부 홈페이지

- 최종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성적 6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
-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순위
 - ▶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
 - ▶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 - ▶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 - ▶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
- 불합격자 성적안내 : 9. 21.(월) 09:00 ~ 18:00 / 개별문의

- 붙임 1. 승진시험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 1부.
2. 「소방공무원법」 출제범위 1부.
3.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1부.
4. 감염병 대응 관련 시험실 운영기준 및 방법 1부.
5.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1부.

<붙임 1>

승진시험과목 「소방전술」 세부 출제범위 (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 1)						
분 야	출제범위	비고				
화재 분야	- 화재의 의의 및 성상 - 화재진압의 의의 -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- 화재진압 전술 -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-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				
	-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화재분야) - 안전관리의 기본 - 소방활동 안전관리 - 재해의 원인, 예방 및 조사 - 안전 교육					
	- 소화약제 및 연소·폭발이론 -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- 화재조사실무(관계법령 포함)	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			
	구조 분야		- 구조개론 -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- 군중통제, 구조장비개론, 구조장비 조작 - 기본구조훈련(로프,확보,하강,등반,도하등) - 응용구조훈련 - 일반(전문) 구조활동(기술)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		
			-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구조분야) -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			
			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	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	
			구급 분야		- 응급의료 개론 - 응급의학 총론 - 응급의료장비 운영 - 심폐정지, 순환부전, 의식장해, 출혈, 일반외상, 두부 및 경추손상, 기도·소화관이물, 대상이상, 체온이상, 감염증, 면역부전, 급성복통, 화학손상, 산부인과질환, 신생아질환, 정신장애, 창상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				- 소방자동차 일반 - 소방자동차 점검·정비 -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- 고가·굴절 사다리차	

※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중앙소방학교 신입교육과정 공통교재 (소방전술 I·II·III) 범위로 한다.

「소방공무원법」 출제범위
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/ 법령체계도

법령체계도

소방공무원법

상하위법 | [신규법](#) | [판례](#) | [현재결정례](#) | [법령해석례](#) | [행정심판례](#) | [의견제시사례](#) | [입법추진현황](#)

[본문](#) | [제정개정문](#) | [연혁](#) | [3단비교](#) | [신규조문대비표](#)

상하위법

- 📁 **소방공무원법** [시행 2020. 4. 1.] [법률 제16768호, 2019. 12. 10., 전부개정]

[본문](#)
[3단비교](#)
[판례등](#)
 - 📁 **소방공무원임용령** [시행 2020. 6. 30.] [대통령령 제30807호, 2020. 6. 30., 타법개정]
 - 📄 **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** [시행 2020. 4. 1.] [행정안전부령 제168호, 2020. 3. 13., 일부개정]
 - 📁 **공무원고충처리규정**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
 - 📁 **공무원보수규정** [시행 2020. 6. 23.] [대통령령 제30803호, 2020. 6. 23., 타법개정]
 - 📁 **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**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
 - 📁 **소방공무원 복무규정**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
 - 📁 **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**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
 - 📄 **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** [시행 2020. 4. 1.] [행정안전부령 제168호, 2020. 3. 13., 일부개정]
 - 📁 **소방공무원 징계령**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
 - 📁 **소방공무원기장령** [시행 2020. 5. 4.] [대통령령 제30661호, 2020. 5. 4., 일부개정]

필기시험문제 문의서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|
| 성 명 | | 응시번호 | |
| 연락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대전화 : • 이 메 일 : | | |
| 응시분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도 승진시험(소방) | | |
| 질의과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과목 : • 문항번호 : A형 - 00번, B형 - 00번 | | |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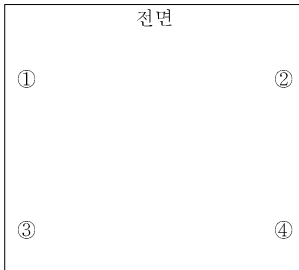
감염병 대응 관련 시험실 운영기준 및 방법

○ 일반 시험실

- 1 시험실 : 20명 이하 입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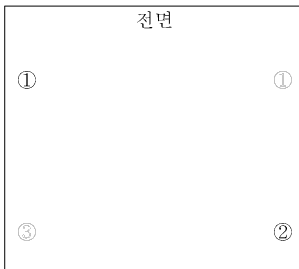
○ 발열자 시험실

- 1 시험장 : 2개 시험실
- 1 시험실 : 4명 이하 입실
 - ↳ 발열자 시험실 좌석배치도



○ 자가격리자 시험실

- 본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건물의 시험장 준비
- 시험장 : 2개 시험실 이상
- 1 시험실 : 2명 이상 입실
 - ↳ 자가격리자 시험실 좌석배치도

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- ▼ 수험생은 **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** 받아야 하며, **마스크를 계속 착용**해야 합니다.
 - 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**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**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실 안밖에서 **불필요한 대화를 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시간 외에도 **다른 수험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**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은 수시로 **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**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**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**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**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**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**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**하여 증상 발생 시 **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
※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
↳ 자가격리자(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) → 별도장소 응시 →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
지역 또는 별도시험장